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윤준병 · 문금주
김원이 · 차지호 · 임미애
조인철 · 박용갑 · 이춘석
조계원 · 허 영 · 이용선
정준호 · 김영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,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,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,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.

이에 「근로기준법」 제7조, 제8조 또는 「선원법」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

로써,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,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8조 개정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제7조, 제8조 또는 「선원법」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8조(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88조(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제7조, 제8조 또는 「선원법」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